경기도 공고 제2021-1030호

2021년 경기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 일정 공고

2021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5월 6일

경 기 도 지 사

1 체력시험 일정

❍ 기 간 : 2021. 5. 13.(목) ~ 5. 27.(목)【10일간, 공휴일 제외】

❍ 대 상 : 필기시험 합격자 1,613명 중 1,609명(공채 961, 경채 648) 【붙임 1】 참조

↳ 경력채용 소방분야(소방장) 3명, 화학분야(소방장) 1명 체력시험 제외

❍ 시험장소 : 서수원 칠보 실내체육관 (수원시 소재) 【붙임 2】 참조

↳ 체육관 바닥 형태 : 목재 바닥

❍ 등록시간 : 시험당일 08:20 ~ 09:00[오전반] / 13:20 ~ 14:00[오후반]

※ 시험당일 지정된 시간까지(09:00 또는 14:00) 등록을 못 할 경우 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함.(시간 초과 시 입실 절대 불가)

❍ 평가방법 등 : 종목 및 평가점수【붙임 3】, 측정방법【붙임 4】 참조

2 응시자 준비물

❍ 응시표 : 「119고시 사이트」에서 2021. 5. 6.(목)부터 출력 가능

※ 필기시험 시 출력한 응시표 사용 가능

❍ 신분증* : 미지참 시 시험 응시 불가

*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, 운전면허증, 기간만료 전 여권 중 하나

※ 원서접수 이후 개명(改名)한 응시자는 기본증명서(상세내역 포함)를 반드시 지참하기 바람.

❍ **마스크** : '코로나19' 예방 관련 **마스크[KF80이상] 미착용 시 출입 불가 ※ 여분 마스크 준비**

❍ **기 타** : **운동복, 실내운동화*, 도핑테스트 동의서【붙임 6】 등**

* 제자리 멀리뛰기는 전자식으로 측정할 예정이니 스파이크·축구화 등 신발 바닥면이 돌출되어 실내 마루를 파손시키는 신발은 불가하며, 실내운동화만 착용 가능

※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시험실시기관에서 제공한 반코팅장갑 외 사용 불가(탄마가루 등)

3 응시자 유의사항

[일반사항]

❍ **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이 불가**하며, **우천 시에도 시험은 예정대로 실시**함.

※ 단, 시험당일 천재지변 등으로 체력시험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시험일을 응시생에게 알리고,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임.

❍ 응시자는 **응시표, 신분증, 마스크[KF80이상]** 등을 반드시 지참하고 시험당일 **지정된 시간까지 시험장소에 입장** 완료하기 바라며, **이후에는 입장이 불가함. (출입문 폐쇄)**

※ 오전반일 경우 : 08:20부터 09:00까지 등록 / 오후반일 경우 : 13:20부터 14:00까지 등록

❍ 체력시험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, **체력시험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**으로 함.

❍ 체력시험일에 해당 조별로 **"악력·배근력·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·제자리멀리뛰기·윗몸일으키기"**를 우선 실시하고, **"왕복오래달리기"**를 통합 운영할 예정임.

❍ 체력 측정 시 모든 종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, **왕복오래달리기 종목 측정 시에만 벗는 것이 허용**됨.(단, 측정이 종료되면 바로 착용하여야 함)

❍ **체력시험 장비 제조사, 종류 등은 시험 전에 공개하지 않으며, 체력시험 세부 운영 방법(측정방법, 실격기준 등)은 시험 당일 응시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**하며, 응시자 부주의로 교육을 받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.

❍ **악력,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 시,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, 평가점수를 산정**함.

❍ **배근력, 제자리멀리뛰기 측정 시,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고, 평가점수를 산정**함.

❍ **시험운영기관에서는 체력시험 판정 보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상촬영을 실시하며, 응시자가 체력시험 등록 시 체력시험 영상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, 당일 체력시험 종료 후 폐기**함.

❍ **종목별 측정 시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종목을 실시 후 즉시 이의신청을 해야하며, 영상 촬영 판독 결과에 따라 이의제기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, 이후 이의제기는 불가**함.

❍ 응시자 본인이 휴대하거나 소지한 물품은 본인이 잘 관리하도록 하며, 혹시 도난, 분실, 파손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**응시자 본인에게 있음**.

[부정행위 등]

❍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 할 수 없으며, 체력 시험 중 통신장비 소지자(휴대전화, 스마트워치 등)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.

❍ 응시자가 **무단으로 시험종목에 미 응시할 경우 중도 포기로 간주하고, 일부 시험종목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시험본부에 직접 알려야 하며, 이전까지 취득한 점수는 유효한 점수로 인정**됨.

❍ **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복장 및 용모는 시험 운영 과정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용모를 단정히 하고 시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람.**

❍ **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사람** 또는 대리시험을 의뢰한 사람 등 부정행위자는 「소방공무원 임용령」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등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.

[도핑테스트]

❍ 도핑테스트에 선정된 응시자는 중도탈락, 포기와 상관없이 도핑테스트에 응하여야 하며 무단이탈 또는 거부할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.

도핑테스트 실시 안내

❖ **선정인원 : 체력시험 응시대상자의 5%**
❖ 대상선정 : 무작위 추첨, 응시자 등록 종료 후 실시
❖ 시료채취 : 체력시험 6종목 종료 후 실시
※ 도핑테스트 대상자로 선정된 중도 포기자(사전 탈락자)는 바로 테스트 실시
❖ 안내문,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등 : 【붙임 5 ~ 8】 참조

[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]

◇ **코로나19 확진환자 ⇒ 퇴원 기간을 고려하여 별도시험 예정**
※ 단, 본인의 해당 체력시험일까지 완치판정을 받은 응시자는 응시가능 / 개별 신고
◇ **코로나19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자 ⇒ 별도 시험일에 시험 실시**
- 장소 : 경기도소방학교 종합훈련장 / - 시간 : 응시자별 개별통보
◇ **시험당일 발열체크 시 이상 증상이 나타난 응시자 ⇒ 마지막 순번 조정 후 별도 실시**

❍ **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시험 당일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(체육관) 출입을 전면 통제함.**

❍ 시험장소에 출입 전 응시자는 **반드시 마스크[KF80이상], 개인 위생 용품** 등을 준비하기 바라며,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**올바른 마스크 착용, 손소독 및 발열검사, 시험장 환기**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 바람.

❍ 보건 당국의 관리대상자 외에도 **단순발열, 호흡기 증상 등**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타 응시자의 안전을 위해 **본인의 건강상태를** 「119고시 사이트」에서 **자진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자진 신고**하기 바람. **【붙임 9】** 참조
※ 필요할 경우 보건 당국에 관련 사항에 대한 조회·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.

❍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**자가격리 중인 응시생은 본인의 해당 시험일정에 응시가 불가함.**
단,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아래 '자가격리자 등 자진신고 안내'에 따라 **사전 신청 시 시험기관에서 관할보건소 등 보건당국과의 협의**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, **별도 지정된 시험일 및 장소에서 응시**할 수 있음.

★ **자가격리자 등 자진신고 안내** ★
- 신고기간 : **2021. 5. 6.(목) 09:00 ~ 응시자 본인의 응시예정일 전일 24:00까지**
- 등록방법 :「119고시 사이트」 자진신고시스템에 기록
- 기록내용 : 응시자 본인의 자가격리 여부, 건강 상태, 출입국 이력 등을 사전에 등록
⇒ 결과에 따라 **별도 지정된 시험일 및 별도 장소 등에서 시험 응시**

※ **응시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**는 ① 자가격리자 체력시험 신청서【붙임 10】 ② 보건소장이 발급한 자가격리통지서 사본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팀으로 팩스(031-280-8500) 발송 후 유선 통보(031-329-0322~8) 하기 바람.
↳ 장소 등 시험응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개별 유선 통보(예정)

❍ 상기 신청 기간 이후는 접수를 받지 않으며, 신고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. **단, 신고기간 이후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응시자는 본인 시험시간까지 유선통보 후 상기 서류(①, ②)를 이메일(bbankar@gg.go.kr)로 제출한 경우만 인정함.**

❍ 시험장 주출입구를 단일화하고, 응시생, 시험감독관 등 시험장 출입자 전원에 대해 손소독 및 발열검사(비접촉식 체온계 등) 실시할 예정임.

- 발열검사 및 2차 문진 후 감염의심증상(발열 37.5℃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 등)이 있는 응시생은 **마지막 순번 등으로 조정**하여 분리 응시

❍ 시험 시작 전 유증상자 등은 **마지막 순번 등으로 조정**하여 시험이 진행됨.

※ 응시자 등록 후 관할 보건소 통보 → 선별진료소 방문 연계 등 조치

❍ 시험장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응시자 여러분께서는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, 안심하고 시험에 응시하기 바람.

❍ 다음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관 등이 **즉시 퇴실조치** 할 예정임.

▹ 발열검사 등 시험장 출입 전 방역 확인 요구에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
▹ 감독관의 별도 안내 없이 마스크를 탈의한 경우
▹ 그 밖에 다른 응시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

❍ 시험응시가 불가한 응시생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9조의3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, 「소방공무원 임용령」 제51조 규정을 준용함.

❍ 기타 자세한 내용은 119고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'2021년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행계획 공고(2021. 2. 24. 게시)'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람.

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

★★ 마스크 미착용 및 신분증 미지참 시 시험 응시 불가 ★★

▼ 응시생은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,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,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.

※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별도 시험일 또는 시험장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※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[KF80이상] 소지 권장

▼ 발열, 호흡기 증상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방역담당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▼ 시험장 안·밖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▼ 시험시간 외에도 다른 응시생과 1.5m 이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▼ 응시생은 수시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,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하시기 바랍니다.

▼ 응시생 개인이 사용한 휴지,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,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

▼ 응시자는 체력시험 등록 시 본인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.

▼ 시험에 응시한 응시생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,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(☎1339, 지역번호+120)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체력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.

※ 확진자 등은 별도 시험일 별도 장소에서 응시(자진신고시스템 신청자에 한함).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1조제3항에 의거 격리대상자 등은 시험장에서의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.

↳ 자가격리자 등(최근 14일 이전 해외입국자 포함) → 별도장소 응시 → 응시자에게 별도 통보

4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 안내

❍ 공고일자 : **2021. 6. 15.(화)**

❍ 공고방법 : 119고시 홈페이지[http://119gosi.kr] 게시

※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응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.

【참고】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시험정보 : https://119.gg.go.kr/ 시험정보 / 신규채용 / 공고·고시

붙임 1. 체력시험 일자별 응시대상(응시번호별 일정 - 첨부파일 참조) 1부.
2. 체력시험 장소 안내 1부.
3.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1부.
4. 체력시험 측정방법 1부.
5. 도핑테스트 안내문 1부.
6. 도핑테스트 응시자 동의서 1부.
7.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1부.
8. 도핑테스트 양성반응자 치료목적 면책신청서 1부.
9. 자진신고시스템 운영 안내문 1부.
10. 자가격리자 체력시험 신청서 1부. 끝.

<문의전화> (평일 09:00 ~ 18:00, 점심시간 12:00 ~ 13:00 제외)

◆ 시험관련 문의

- 문의처 :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실
- 연락처 : (044) 205-7287~7294
- 문의처 :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팀
- 연락처 : (031) 329-0322~0328

◆ 원서접수 사이트 관련(응시표 출력, 원서접수사이트 장애 등)

- 문의처 : 에스이코리아
- 연락처 : 053-474-1212

붙임 2 체력시험 장소 안내

□ 체력시험장 [서수원칠보체육관]

※ 이용 교통수단 및 거리 등 사전에 필히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
(주소)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577번길 171(금곡동) (☎ 031-259-540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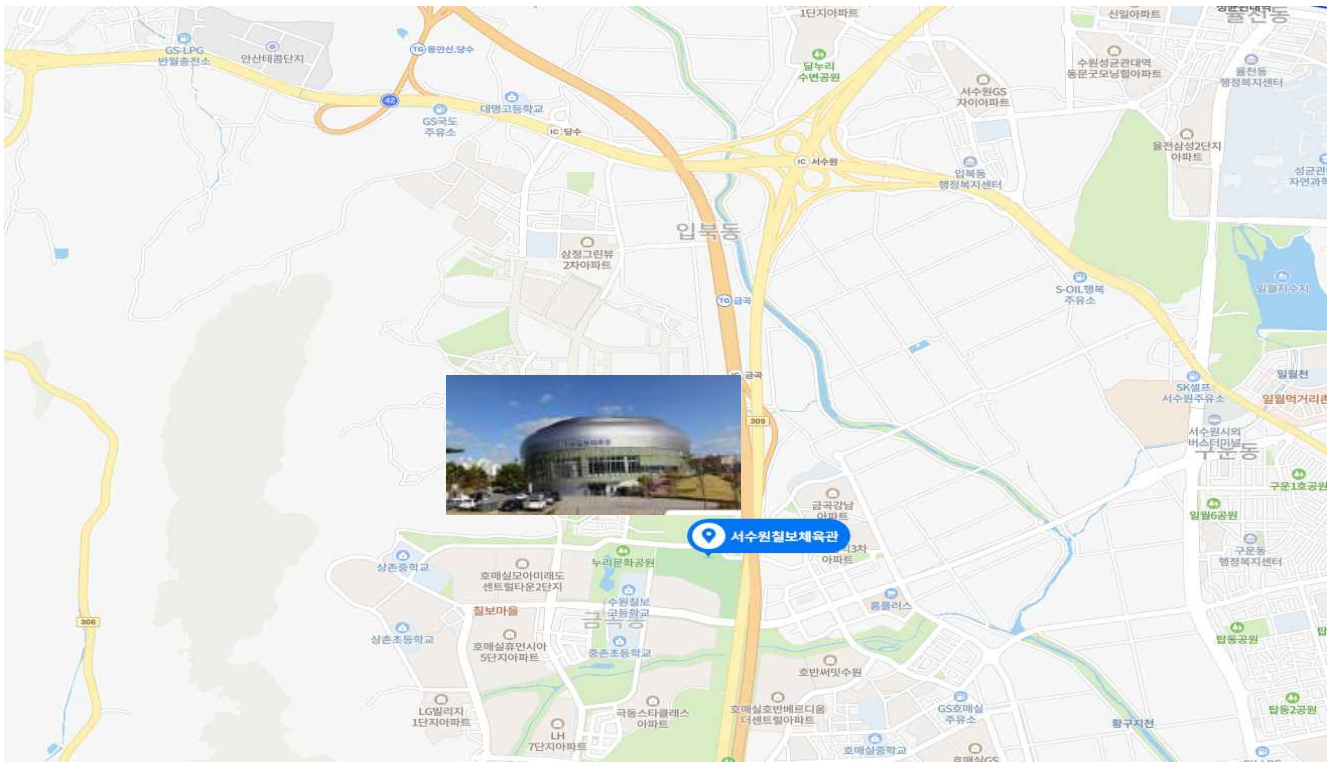

붙임 3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

종목	성별	평가점수									
		1	2	3	4	5	6	7	8	9	10
악력 (kg)	남	45.3~48.0	48.1~50.0	50.1~51.5	51.6~52.8	52.9~54.1	54.2~55.4	55.5~56.7	56.8~58.0	58.1~59.9	60.0 이상
	여	27.6~28.9	29.0~30.2	30.3~31.1	31.2~31.9	32.0~32.9	33.0~33.7	33.8~34.6	34.7~35.7	35.8~36.9	37.0 이상
배근력 (kg)	남	147~153	154~158	159~165	166~169	170~173	174~178	179~185	186~194	195~205	206 이상
	여	85~91	92~95	96~98	99~101	102~104	105~107	108~110	111~114	115~120	121 이상
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(㎝)	남	16.1~17.3	17.4~18.3	18.4~19.8	19.9~20.6	20.7~21.6	21.7~22.4	22.5~23.2	23.3~24.2	24.3~25.7	25.8 이상
	여	19.5~20.6	20.7~21.6	21.7~22.6	22.7~23.4	23.5~24.8	24.9~25.4	25.5~26.1	26.2~26.7	26.8~27.9	28.0 이상
제자리 멀리뛰기 (㎝)	남	223~231	232~236	237~239	240~242	243~245	246~249	250~254	255~257	258~262	263 이상
	여	160~164	165~168	169~172	173~176	177~180	181~184	185~188	189~193	194~198	199 이상
윗 몸 일으키기 (회/분)	남	43	44	45	46	47	48	49	50	51	52 이상
	여	33	34	35	36	37	38	39	40	41	42 이상
왕복 오래 달리기 (회)	남	57~59	60~61	62~63	64~67	68~71	72~74	75	76	77	78 이상
	여	28	29~30	31	32~33	34~36	37~39	40	41	42	43 이상

〈 비 고 〉

1. 「소방공무원임용령」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.
2.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붙임 4 체력시험 측정방법

종 목	측 정 방 법 등
악 력 (kg)	○ 측정 장비 : 스메들리(smedley)식 악력계 ○ 측정 단위 : kg ○ 측정 방법 :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,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.
배 근 력 (kg)	○ 측정 장비 : 배근력계 ○ 측정 단위 : kg ○ 측정 방법 :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°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.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.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.
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(cm)	○ 측정 장비 :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(전자식 측정기 가능), 매트 1개 ○ 측정 단위 : cm ○ 측정 방법 - 응시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.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. -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자세를 취한다. - '시작'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. - 보조원은 응시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. - 측정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. -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. ※ 유의사항 :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쳤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.

종 목	측 정 방 법 등
제자리 멀리뛰기 (cm)	○ 측정 장비 : 구름판 및 모래터(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)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○ 측정 기록 : cm ○ 측정 방법 :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,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,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(신체의 어느 한 부분)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.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.
윗몸 일으키기 (회/분)	○ 측정 장비 : 매트(윗몸일으키기대,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) ○ 측정 기록 : 회 ○ 측정 방법 :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°이상 일으킨다.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.
왕복오래 달리기 (회)	○ 측정 장비(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) - 최소 길이 20m,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-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-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- 녹음 CD : 별도 ○ 측정 기록 : 단위(회) ○ 측정 방법 - 20m 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. - 출발신호원의 '출발'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. -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'출발'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. -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. -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. -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. -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.

비 고 :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(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)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.

붙임 5 『도핑테스트』 안내문

□ **도핑테스트 시행안내**

-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등은 금지되며,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(도핑테스트)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□ **금지약물 및 금지방법**

- 「**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**(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-1호)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은 금지됩니다.

□ **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**

-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.

□ **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**

- 채취된 소변 시료(A, B)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,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,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.
-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.
-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(양성)가 나온 경우,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, B시료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.
-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,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,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,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, B시료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경우,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.
-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,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

□ **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**

-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(양성)가 나온 경우 **【붙임 8】 서식**을 작성, 구비서류를 갖추어 **별도 지정일까지 신청**하여야 합니다. (단,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.)
-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.

> ▶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,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.
>
> ▶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.
>
> ▶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.

□ **기타 유의사항**

-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.
- 모든 응시자는 **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**하여야 하며, **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** **※ 동의서는 사전작성하여 체력시험 당일 제출**
- 응시자는 토핑테스트 결과, 비정상분석(양성)이 나온 경우에는 「소방공무원임용령」 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.

✓ **금지약물 검색 사이트**(금지약물은 성분명으로 발표)

- www.kada-ad.or.kr (금지약물 검색 → 검색자 해당종목 및 직업 “기타”)
- www.druginfo.co.kr
- www.kimsonline.co.kr

붙임 6 **도핑테스트 응시자 동의서** ⇒ 사전작성하여 체력시험 당일 제출

도핑테스트 응시자 동의서

□ 성 명 : □ 생년월일 :

□ 응시번호 : □ 휴대전화 :

위 본인은 경기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「소방공무원임용령」 제51조에 따른 금지약물의 복용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확인절차에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.

2021년 월 일

위 본인 (서명 또는 날인)

경기도지사 귀하

✂---------- *절* ---------- *취* ---------- *선* ----------✂

《 도핑테스트 추첨 용지 》

○ 응시번호 : ○ 응시분야 :

○ 성 명 : ○ 휴대전화 :

※ 전 시험(6종목)이 종료되기 전 **응시 포기자는 시험본부에 승인**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추첨위원) 소속 : , 성 명 : (서명)

붙임 7 『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』

Ⅰ. 금지약물(총 24종)

1. 동화작용제 :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[1)]

가.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(AAS)

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(Exogenous AAS)

- drostanolone
- methenolone
- stanozolol
- methasterone(17β-hydroxy-2α,17α-dimethyl-5α-androstan-3-one)
- 1-testosterone(17β-hydroxy-5α-androst-1-en-3-one)

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(Endogenous AAS)

- testosterone

나. 기타 동화작용제 : Clenbuterol

2. 이뇨제 : 총 3종

- hydrochlorothiazide
- chlorothiazide
- furosemide

3. 흥분제 : 총 3종

- methylhexaneamine(dimethylpentylamine)
- methylephedrine
- ephedrine

※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.

4. 마약류 : 총 11종

- Buprenorphine
- dextromoramide
- diamorphine(heroin)
- fentanyl 및 유도체
- hydromorphone
- methadone
- morphine
- oxycodone
- oxymorphone
- pentazocine
- pethidine

Ⅱ. 금지방법

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 (소변 바꿔치기 및/또는 섞기,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.)

1)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

붙임 8 도핑테스트 양성반응자 치료목적 면책신청서

1. 응시자 인적사항

1. 성명:_____ 2. 성별: 여 □ 남 □

3. 생년월일:_____ 4. 응시번호:_____

5. 핸드폰:_____ 6. 이메일:_____

2. 의료정보

1)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

_____

_____

_____

2)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,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시오

_____

_____

_____

※ **진단증빙자료(진단서,처방전,소견서등)를 첨부**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,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.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,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,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.

3. 세부 진료내용

금지약물	1회 사용량	사용방법	사용빈도
1.			
2.			
3.			

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:	1회 □ 응급 □ 기간(주/월)_____

4. 담당의사 서약

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,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 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.

성명:_____ **전공분야**:_____

주소:_____

전화:_____ **팩스**:_____ **이메일**:_____

서명:_____ **날짜**:_____

5. 응시자 서약

본인,_____는(은)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 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.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,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.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.

서명:_____ **날짜**:_____

부모/보호자 서명:_____ **날짜**:_____

(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.)

※ **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,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.**
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오.

붙임 9 **자진신고시스템 운영 안내문(코로나19확진 및 자가격리자)**

-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자 -
자진신고시스템 운영 안내문

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응시자(본인)의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 별도 시험을 시행을 안내하고자 함.

■ (대 상) 2021년 경기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 시험 응시자 중 **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통지를 받아 본인 응시 예정일**까지 격리 중인 응시자

■ (신청기간) 본인 응시 예정일 전일 24시까지

※ 별도 시험 준비 등을 감안하여 신청기간을 최소한으로 한정함.

※ 응시 예정일 전일 24시까지 응시 신청서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응시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응시가 불가합니다.

■ (신청방법) ①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실로 유선(044-205-7287~7294) 통보

② 첨부서류 제출(팩스 또는 메일)

■ (첨부서류) 시험응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제공 동의서(붙임 10)

◆ 메 일 : bbankar@gg.go.kr ◆ 팩 스 : ☎ 031-280-8500

■ (시험 안내) 시험응시 신청자에게 장소 및 일정 개별 유선 통보(**시험 예정일 前**)

■ (유의사항)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방역수준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.

※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3항 의거

2차검사 문진표

※ 문진표는 감염병관리전담자 직접 작성

■ 성명 :	■ 응시번호 :
	(　　)시험장 (　　)시험실

A. 증상 (해당항목에 ☑하세요)

□ 발열(37.5℃ 이상) (　　℃)	①
□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	②

B. 조사대상 유증상자(해당항목에 ☑하세요)

□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	③
□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,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	④

C. 노출/접촉력(해당항목에 ☑하세요)

□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	⑤

D. 해외 방문(해당항목에 ☑하세요)

□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에서 입국한 자	⑥

■ 조치결과

□ **체력시험 응시 가능** (　　) * A 증상이 **경미**한 경우 (답변 예) 증상이 경미한 정도이니, 일반시험장에서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□ **체력시험 순번 조정** (　　) * A 증상이 **지속**되는 경우 (답변 예) 기침 등 증상이 타 응시생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순번조정 후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당일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□ **별도 시험 대상** (　　) * **38.5℃ 이상 고열**이 지속되는 등 격리가 필요한 경우 (답변 예) 혹시 모를 위험을 방지하고자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다만,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고자 할 경우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, 시험이 끝난 후 코로나19관련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상황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.
□ **보건소 이송** (　　) * B, C, D에 해당하는 경우 (답변 예) 응시생의 상황이 자가격리자에 해당되므로 시험장에서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. 보건소 이송 후 추후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.

붙임 10 **자가격리자 체력시험 신청서**

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

□ 인적사항

성 명		주민등록번호	-
휴대전화	- -	응시번호	
현 주소지			
격리 기간		관할 보건소	

□ 제출 서류

※ **서류 제출현황** (제출시 □에 'V' 체크)

① 시험응시 신청서 □ (공통)

②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 □ (공통)

③ 체력시험 응시가능 의사 소견서 □ (확진자용)

상기 본인은

2021년 경기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

별도 응시를 신청합니다.

2021 . . 신청자: (서명 또는 인)

경기도지사 귀하

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

경기도에서는 『개인정보보호법』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,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Ⅰ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귀하께서 제공한 모든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,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.

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·이용 목적

가. 수집 및 이용 목적

-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·면허·경력 등 조회·확인(신원조사·신원조회 포함)

나. 수집항목

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등록기준지, 메일, 전화번호, 학력·경력사항, 자격·면허 소지사항

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
- 수집·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

③ 동의거부 관리

-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,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. 다만,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, 개인정보 수집,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? 동의함 □ 동의안함 □ 2021년 월 일 성명: (서명 또는 인)

Ⅱ.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

※ 고유식별정보 :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, 외국인등록번호

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·이용 목적

가. 수집 및 이용목적

-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·면허·경력 등 조회·확인(신원조사·신원조회 포함)

나. 수집항목

- 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번호, 자격번호 등

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
- 수집·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

③ 동의거부 관리

-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,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. 다만,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, 고유식별정보 수집,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? 동의함 □ 동의안함 □ 2021년 월 일 성명: (서명 또는 인)